

# 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



## 신고대상 및 내용

### ■ 신고대상 무단방치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

- 도로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
-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

### ■ 신고내용

- 방치장소, 방치기간, 방치사유 등 세부내역
- 차량정보(자동차번호, 차명, 소유자, 색상 등)
- 신고인 성명, 연락처 등

## 신고방법 및 절차

### ■ 신고방법

- 도로에 방치한 경우: 유선 또는 방문 신고
-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
  - ▶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
    - 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장명으로 신고
  - ▶ 사유지
    - (아파트, 다세대, 다가구, 오피스텔, 상가 등)
    - 토지소유자나 관리자명으로 요청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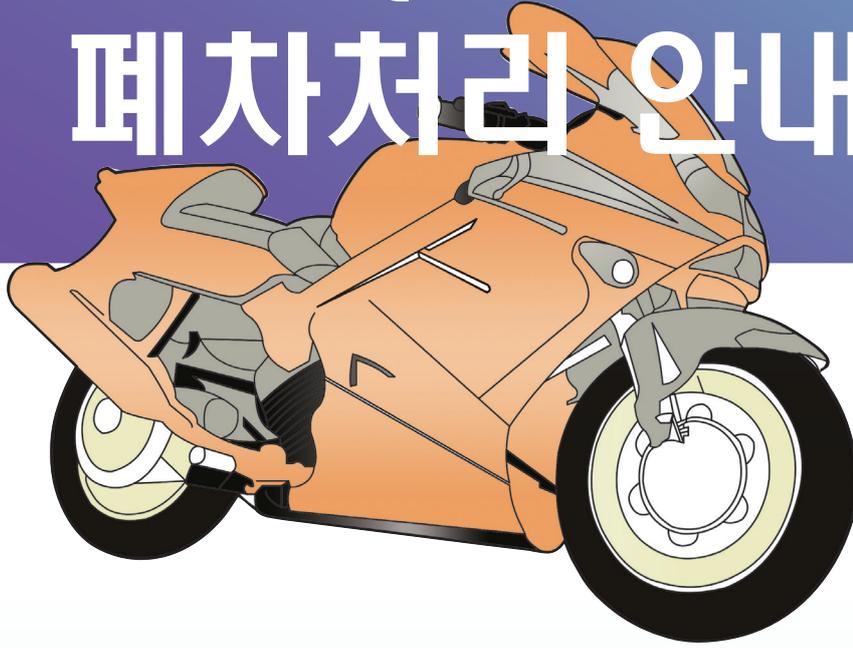
### ■ 신고절차(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)

- ① 자체안내문 부착
- ② 게시판공고 및 안내방송, 세대별 확인, 내용증명발송 등
- ③ 방치자동차신고서 제출

무단방치 자동차는 견인 및 폐차처리하며 무단방치자에게는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함(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).

**신고할 곳: 강북구청 교통행정과(☎ 02-901-5943)**

# 이륜차(오토바이) 폐차처리 안내



##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방법

- 신고할 곳: 미아역 2번 출구 미아동복합청사 1층 자동차등록팀 (☎ 02-901-5934)
- 구비서류

구분	개인	법인
기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용폐지신고서(구청에 구비)</li> <li>② 이륜차 번호판</li> <li>③ 소유자 신분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용폐지신고서(구청에 구비)</li> <li>② 이륜차 번호판</li> <li>③ 소유자 신분증</li> <li>④ 법인인감증명서</li> <li>⑤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
위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④ 위임장(구청에 구비)</li> <li>⑤ 대리인 신분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④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</li> <li>⑤ 대리인 신분증</li> </ul>

## 이륜차 폐차 방법

- 폐지신고 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(자동차등록팀)를 준비하여 관련 업체에 폐차 의뢰

## 자동차(이륜차) 폐차업체

- 삼일오토: 도봉영업소 02-900-3104
- 중앙RDC: 서울영업소 02-992-4884
- 동강그린모터스: 031-592-8782
- ※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(02-867-0623) 홈페이지 참고